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고찰*

조 은 래**

차 례

- I. 서설
- II. 베트남의 환경오염 현황과 환경관리 및 규제
- III. 환경보호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 IV. 결어

[국문초록]

베트남은 최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증가, 자연자원의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했다는 인식하에, 환경보호와 규제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2014년 환경보호법의 개정에서 한국, 일본, UN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선진적인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 환경보호법의 내용들은 2013년에 개정된 베트남 헌법 제43조의 환경권과 제63조의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수립, 환경보호활동의 장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체로 환경법의 기본원칙들과 함께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자연환경(수질, 토양, 대기), 경제활동에서의 환경보호, 폐기물의 관리,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 환경보호 비용과 기금, 환경분쟁의 해결 및 환경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에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베트남이 참여하는 로드맵 및 방법에 관한 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법에서도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환경법 수준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오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부교수.

염물질의 규제 기준치는 서양의 국가처럼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정의에서 폐수와 가스 등을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에 관한 규제와 기준은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폐수의 관리와 배기가스, 소음, 진동 및 방사능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환경보호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처리 및 피해에 있어서 환경사고의 원인과 피해자 그리고 국가라는 3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환경손해와 책임에 있어서도 환경손해의 개념이 명확하며, 환경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각 기업에 대하여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 권장과 특정의 조직과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규정한 것은 매우 진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도의 집행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 성장과 경제 개발이 우선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 간의 권한의 중복과 책임의 불이행도 적지 않다. 그 외에 사업 주체가 수익성을 위해 환경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인재의 육성, 환경보호 재원의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정책의 변화와 환경 범규의 빈번한 개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외국의 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정책들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I. 서설

베트남은 1990년대부터 외국 기업들의 투자열기가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외자유대 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발전하는 반면에 대기, 수질, 토양 등에 대한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증가, 자연자원의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8년 9월에 베트남 동남부의 론 타인 성에서 조미료를 생산하는 대만계 공장이 허용 기준의 1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여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¹⁾ 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의 자연자

1) 2008년 9월 8일 자연자원 환경부의 환경 경찰과 수사팀은 대만의 Vedan Enterprise Corporation의 그룹 회사인 Vedan Vietnam Enterprise Corporation Limited가 타바이 하천에 미처리 폐수를 배출한 것을 적발하였다. 그 결과 Vedan Vietnam은 2008년 10월 6일자 결정 131/QD-XPHC에

원 환경부(이하 환경부라고 함)²⁾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에 중점을 두고 환경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했다는 인식하에, 환경보호와 규제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2012년 9월의 총리 결정(1216/QĐ-TTg)에 의하면 2020년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전략으로 환경오염의 근원을 줄이고, 오염되고 악화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며, 자연자원의 악화 및 고갈을 완화하고, 생물다양성의 퇴보를 억제할 것과 기후변화의 대응능력을 제고한 온실가스의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³⁾ 베트남의 환경 법령의 입법과 단속은 환경부가 소관하고, 각 지방의 자연자원 환경국에서는 기업의 현장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기준 및 규정은 외자 기업과 국내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목할 것은 2008년의 론 타인 성 사건 이후 제조업, 특히 펄프 제지와 철강, 시멘트 공장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심사 및 출입 검사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으며, 환경법규의 준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투자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⁴⁾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2003년에 1차로 개정되고 2014년 6월 23일에 2차로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의해 2억 6,750만 동(베트남)의 행정 처벌을 받았다. 또한, 폐수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2,000억 동의 손해배상을 지불하였다. 國際協力銀行, ベトナムの投資環境, 株式会社國際協力銀行, 2017, 96-97면.

- 2) 현행의 자연자원 환경부는 1993년 신설된 과학기술환경부 소속의 환경국으로 출발하여 국가 전체의 환경관리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최초의 환경조직이었다. 2002년에 환경부문이 별도로 분리되고 자연자원 관리조직이 통합되면서 자연자원환경부로 설립되었다. 정경연, “베트남 환경관리 체계와 환경산업 투자전망”, GGGP(special issues), 제87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01, 4면.
- 3) <https://www.env.go.jp/air/tech/ine/asia/vietnam/files/law/QD1216-English.pdf>, 1-2면 ; Asian Development Bank, Viet Nam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ssessment, 2013, p.1 이하 참고.
- 4)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 할 때 투자허가신청을 하지만 동시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환경인증서를 취득한 기업은 1년마다 1-2회 환경 모니터링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장부지 내에 폐수처리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업 후 6개월 이내에 지방 또는 중앙의 환경부서에 오염증명을 제출하고 오염인증서 및 환경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http://www.pref.okayama.jp/uploaded/life/330052_1523241_misc.pdf, 1면 이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각 사업의 실시에 따라 준수해야 할 환경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에 정부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위반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에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소급하여 적발되는 등,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 환경관련 법규규제의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법제도의 구조와 빈번한 개정, 그리고 관련 법령의 영어번역문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변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환경 관련법에 대한 제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⁵⁾

향후에도 베트남은 외국 기업들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환경 법규의 준수와 환경 관리의 철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베트남의 환경관리 및 규제와 2015년에 시행된 베트남의 새로운 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베트남의 환경오염 현황과 환경관리 및 규제

1. 환경오염의 현황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환경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⁶⁾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은 인구증가율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가속화, 그리고 환경교육 및 문화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⁷⁾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작성된 베트남 정부의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은 특히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시 되고

5) ジェトロ・ハノイ事務所, 改訂環境保護法(2015/01/01施行)等の環境法規の動向について, 2015. 3, 1면(http://www.jetro.go.jp/world/asia/vn/business/pdf/VN_20140623.pdf)

6) 베트남 환경보호법상 환경오염이란 환경구성요소의 변화가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과 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환경악화란 환경구성요소의 성질과 양이 악화되어 인간과 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8호-제9호).

7) <https://www.export.gov/article?id=Vietnam-Environmental-and-Pollution-Control-Equipment-and-Services>(검색일, 2018. 3.4, Vietnam Country Commercial Guide, Vietnam-Environmental and Pollution Control Equipment and Services, 2017. 7)

있으며, 대기오염은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와 공업 도시 등에서 오염 수준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낡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장과 환경행정과 관리의 불비와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환경오염은 베트남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⁸⁾

산업화와 현대화를 위하여 많은 공장들이 설치되어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와 폐수 등이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삼림 파괴도 베트남 특유의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전쟁 중에 분산된 대량의 고엽제는 광대한 면적의 삼림을 파괴하였고, 다이옥신에 의한 오염도 잔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도시의 인구 집중에 의해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오염 과 폐수 및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도시생활형 환경문제도 발생하였다.⁹⁾

베트남의 대기오염은 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배기가스와 공장 등의 산업시설 에서의 유해 물질의 방출에 의한 것이다. 대기오염은 베트남 전역에 퍼져 있지만, 특히 수도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등 대도시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¹⁰⁾ 베트남인의 사망자 가운데 약 10%가 대기오염에 기인한다고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셋(Lancet)'의 최근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베트남은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에서 4번째로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¹¹⁾ 대기오염은 공장의 배기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실외 대기오염과 실내에서 요리나 난방을 위해 나무와 숯, 석탄, 쓰레기 등을 연소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 등이 주요한 원인이다.¹²⁾ 하노이 등 특히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대기오염 의 저감을 위한 자전거와 자동차의 도시 중심부에 노선의 연장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¹³⁾

8) 國際協力銀行, 앞의 글, 94면.

9) <http://www.rotary-aomori.org/2007/2007-data/speech1.pdf>(ベトナムの環境問題), 1-2면.; <http://www.oecd.or.jp/wp-content/uploads/2017/05/41p8.pdf> 참고.

10) Tuan AnhHoang, Nam Xuan Chu, Trung Van Tra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 Vietnam: Source, Impact And Reme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Y RESEARCH, VOLUME 6, ISSUE 02, 2017. 2, p. 1 이하.; <https://poste-vn.com/life-tips/ベトナムの環境問題-109>(검색일, 2017. 12.29)

11) 상기의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대기오염에 관련된 사망자 수는 1990년에는 2만 6300명 이었으나 2015년에는 4만 2200명으로 약 60% 증가하였다고 한다.

12) Tuan Anh Hoang, Nam Xuan Chu, Trung Van Tran, op, cit., p. 249.

13) Vietnam News Limer, 2017. 10. 26.; Vietnam Investment Review, Air pollution is Vietnam's

베트남의 수질오염은 생활하수,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 하천과 호수에 투기되는 폐기물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¹⁴⁾ 상기의 베트남 정부의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공업단지의 공장의 폐수는 불과 60% 밖에 집중 폐수처리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며, 나머지 폐수는 업체가 처리하거나 또는 처리되지 않고 인근의 하천과 강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16년 중반에 대만의 기업 Formosa가 산업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배출한 사건¹⁵⁾이 발생하여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¹⁶⁾ 수질오염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처리시설의 부족과 수질오염 대책 인프라의 미정비를 들 수 있다. 공장이 많은 지역의 강 하류에는 거의 새까맣게 거칠고 악취가 풍기며, 물고기가 서식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곳도 많은 형편이다.¹⁷⁾

2016년 2월 조사에 의하면 수질오염은 가정과 공업, 광업, 수산 양식업의 배수에 따라 지표수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도시 지역과 하류 지역에서의 지표수 환경의 대부분은 유기물로 오염되어 있다. 특히 도시 중심부의 대부분의 하천, 호수, 운하와 수로에서 오염물질의 농도(유기오염의 일반적인 매개 변수에 의해 측정)는 베트남 국가기술기준 QCVN 08(2008년에 정한 B급 수원)의 최대 허용치를 2-6배를 상회하고 있다. 실제로 카우 천, 누에-다이 천, 동나이 천 등 3개의 하천 유역의 오염은 경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¹⁸⁾

silent killer, 2018. 2. 26. ; <http://www.n-liner.jp/society/4241-ベトナム人の死の10%が大気汚染に起因-深刻な社会問題化.html>(검색일, 2017. 12, 3)

14) <https://syracusecoe.org/water-pollution-in-vietnam/>(검색일, 2017. 12.5) ; <https://thewaterproject.org/water-crisis/water-in-crisis-vietnam/>(검색일, 2017. 12.5)

15) 2016년 4월 이후 후에 성을 포함한 중부 베트남의 여러 지방에서 물고기의 폐죽음이 발생하였다. 약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한 후, 2016년 1월 28일에 대만의 Formosa Plastics Corporation의 자회사인 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은 동 회사에 의한 산업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하여 베트남 중부 지방에서 물고기의 폐죽음을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사건 조사에 의하면 해당 행위에 의해 70톤 이상의 물고기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Formosa는 피해자 및 해양 환경의 회복을 위해 총 5억 달러(미화)의 손해배상 지불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2016년 8월 30일에 이것을 지불하였다. 단 본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었다는 보도는 되지 않았다.

16) 國際協力銀行, 앞의 책, 94면 ; GREEN GROWTH & ENVIRONMENT SECTOR COOPERATION BETWEEN VIETNAM & DENMARK, Annual report for 2017(Vietnam miljoe.pdf)

17) <https://poste-vn.com/life-tips/ベトナムの環境問題-109>

18) <https://www.env.go.jp/air/tech/ine/asia/vietnam/OsenVT.html>(검색일, 2018. 1.6)

베트남의 토양오염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오염도 있지만 다이옥신 토양오염 이른바 고엽제에 의한 토양오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의한 토양오염이 남아있어 다낭, 비엔 화, 후캇토 등의 각 지역을 비롯해서 토양오염의 주요지역이 남베트남을 중심으로 28개 지역이 확인되었다.¹⁹⁾

이 외에도 화학 비료와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농지의 오염과 미개선, 연안 해역의 유류오염의 증가, 고형폐기물의 수집비율이 낮고 비환경적인 처리, 자연 생태계의 악화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2. 환경 관리 및 규제

(1) 환경 관리 전반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베트남 정부는 2014년 환경보호법의 개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며, 한국, 일본, UN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선진적인 개정작업을 하였다.²⁰⁾ 개정 환경보호법에서는 대체로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자연환경(수질, 토양, 대기), 경제활동에서의 환경보호, 폐기물의 관리,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 환경보호 비용과 기금, 환경 분쟁의 해결 및 환경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5개의 정령을 공포하였다. 즉 2014년 12월 31일 정령 127호(Decree No. 127/2014/ND-CP)²¹⁾, 2015년 1월 6일 정령 3호(Decree No. 03/2015/ND-CP)²²⁾, 2015년 2월 14일 정령 18호(Decree No. 18/2015/ND-CP)²³⁾, 2015년 2월 14일 정령 19호(Decree No. 03/2015/ND-CP)²⁴⁾, 2015년 4월 24일 정령 38호(Decree

¹⁹⁾ <http://library.fes.de/pdf-files/bueros/vietnam/13367.pdf>, 5-7면; <https://www.shimz.co.jp/company/about/news-release/2016/2016023.html>(검색일, 2018. 2.20)

²⁰⁾ 정건영, 앞의 글, 4면.

²¹⁾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인증의 발효, 유효기간의 연장, 사업범위의 수정 및 재발행, 일시적 유효기간의 중단, 실효 및 해약 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규정.

²²⁾ 보상 요구책임 및 환경피해의 평가 등을 규정.

²³⁾ 환경보호계획(EPP), 전략적 환경평가(SEA), 환경영향평가(EIA), 환경보호법상의 환경보호계획 등을 규정.

²⁴⁾ 환경 보호법의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을 규정.

No. 38/2015/ND-CP)²⁵⁾ 등이다. 또한 정령으로 복수의 조항을 상세히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건설부, 교통부 및 재무부는 여러 통지를 공포하고 있다.

그리고 총리는 환경보호법과 그에 따른 기타 법적 문서를 연계시킴으로써 국가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폐기 제품의 회수 및 처리의 규제에 관한 규정인 2015년 3월 22일 결정 16호(Decision No 16/2015/QD-TTg)와 2030년을 내다보는 2016~2025년 기간의 자연자원 및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국가계획을 승인하는 2016년 1월 12일 결정 90호(Decision No. 90/QD-TTg)가 그것이다.²⁶⁾

참고로 베트남의 법규 문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 헌법(Constitution/Hiến pháp)이 있다. ② 국회가 정하는 법률(Law/Luật)이 있으며, 보통 Law No.52/2005/QH11로 표시된다.²⁷⁾ ③ 정부의 정령(Decree/Nghị định)이라는 법규 문서가 있다. 영어로 보통 Decree로 표시되며 “정령”으로 번역된다. 여기서 정부란 총리 이하 각부의 장관을 의미한다.²⁸⁾ ④ 총리의 결정(Decision/Quyết định)이 있다. 보통 Decision No.64/2003/QD-TTg 등으로 표시된다.²⁹⁾ ⑤ 국가기술기준(QCVN)이 있다. 대기환경기준 QCVN05 : 2009/BTNMT 등으로 표시된다.³⁰⁾ 이 외에도 각 부처 장관의 통지(Circular/Thông tư)와 국회 상무위원회의 결의(Resolution/Nghị quyết) 등의 문서가 존재한다.³¹⁾

(2) 주요 환경의 규제

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규제들은 사업 프로젝트의 실행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환경보호계획 보고서의 제출과 환경보호비용의 부담과 환경보호세의 지

25) 폐기물과 폐기재료의 관리에 대한 규정.

26) <https://www.env.go.jp/air/tech/ine/asia/vietnam/SeidoVT.html>(검색일, 2018, 1.6)

27) 여기서 No.52/2005는 2005년의 52번이라는 법률 번호를 나타내며, QH11은 제11기 국회에서 채택된 것임을 나타낸다.

28) 보통 Decree No.80/2006/ND-CP 등으로 표시되며, 2006년 Decree 80호이며, ND는 시행령, CP는 정부가 정한 것을 나타낸다.

29) 2003년의 결정 64호라는 것으로 QD는 결정을, TTg는 총리를 나타낸다.

30) 2009년 QCVN(국가기술기준) 05번, BTNMT는 자연자원 환경부를 의미한다.

31) 환경법규 문서들은 <https://www.env.go.jp/air/tech/ine/asia/vietnam/SeidoVT.html> 참고.

불 등이 있다. 즉 투자자는 투자분야 및 투자범위에 따라 투자 준비기간 동안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사업실시 전에 환경보호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가 요구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환경보호비용은 폐수의 배출기업 또는 사업 활동에 있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의해 부담된다. 즉 폐기물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상태, 유해 및 위험도, 폐기된 환경의 허용치에 따라 계산된다. 그리고 환경보호세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환경보호 세법에 따라 부과된다. 과세 대상 품목으로는 ① 가솔린·석유 등 ② 석탄, ③ 하이드로 프레온 가스(HCFC), ④ 과세대상 비닐봉투, ⑤ 사용이 제한된 제조제 및 살충제, ⑥ 사용이 제한된 방부제, ⑦ 사용이 제한된 창고 살균제 등이다.³²⁾

2015년에는 대기환경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발표되어 관리되고 있다. 즉 통지 수준에서는 환경부, 교통부, 재무부에서 3개의 문서가 발행되어, 이 중 2개의 통지³³⁾는 차량의 배출량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1개의 통지³⁴⁾는 제조업에서의 배출량을 감시하는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다.³⁵⁾

수질환경의 관리에 대해서는 2개의 정부 정령과 5개의 통지 및 1개의 결정을 포함하여 8개의 문서가 정부 및 환경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정령은 2015년 5월 6일 정령 43호(Decree No. 43/2015/ND-CP)³⁶⁾, 2015년 6월 8일 정령 54호(Decree No. 54/2015/ND-CP)³⁷⁾이며, 환경부의 통지는 5개가 발행되어 이 중 4개의 통지는 산업폐수 및 수자원 모니터링 및 예측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인 규범에 관한 국가

32) 國際協力銀行, 앞의 책, 95-96면.

33) 2015년 7월 24일 교통부 통지 33호(Circular No. 33/2015/TT-BGTVT)는 새로이 조립, 제조 및 수입되는 차량의 제 4수준의 가스형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국가 기술기준(QCVN 86 : 2015/BGTVT)이 발행되었다. 그리고 2015년 12월 9일 재무부 통지 199호(Circular No. 199/2015/ TT-BTC)는 제조, 조립 및 새로 수입되는 도로주행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비용, 연료 소비량 시험비용, 7시트 미만 소형차의 에너지표시부착 비용의 지침을 정하고 있다.

34) 2015년 8월 17일 환경부 통지 40호(Circular No. 40/2015/TT-BTNMT)는 제조업자, 가공공장, 공업계사업, 소각로 굴뚝으로부터의 배출을 감시하는 기술적 프로세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5) Tuan Anh Hoang, Nam Xuan Chu, Trung Van Tran, op, cit., p. 252

36) 이는 수원보호 회랑(corridor)의 역할(수원보호 회랑의 설립과 관리의 원칙, 수원 보호 회랑에서 금지된 활동, 수원 보호 회랑의 활동범위, 수원 보호 회랑의 목록의 설립과 발표, 관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37)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 활동에 대한 융자우대, 세금면제 및 경감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표준에 대하여 공포하고³⁸⁾, 1개의 통지는 수자원 계획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³⁹⁾ 또한 2015년 3월 2일 결정 264호 (Decision No 264/2015/QĐ-TTg)에서는 고지대와 물 부족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의 조사 및 탐사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다.⁴⁰⁾

유의할 점은 2016년 대만의 기업 Formosa 사건 이후 베트남 정부는 2016년 8월 31일 환경보전을 위한 긴급명령 및 해결방법에 대한 지침 25/CT-TTg 및 2016년 11월 18일자 2017년 2월 1일 시행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처벌에 관한 정령 155/2016/ND-CP에 의해 불법 폐수방지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강화하였다.⁴¹⁾

3. 검토

베트남에서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은 인구증가율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가속화, 그리고 환경교육 및 문화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많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와 폐수 그리고 도시의 인구 집중에 의해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오염과 생활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도시생활형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2014년에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외국의 투자 기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계획 보고서의 제출, 환경보호비용의 부담과 환경보호세의 지불 등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들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투자허가 신청 시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사업의 투자 허가를 취소한 사례와 수천 건의 환경법 위반사례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한 사례 등이 발생하여,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자와 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베트남 정부는 관련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⁴²⁾

38) 2015년 1월 9일 통지 제1호(Circular No. 01/2015/TT-BTNMT), 2015년 3월 31일 통지 제11호 (Circular No. 11/2015/TT-BTNMT), 2015년 3월 31일 통지 제12호(Circular No. 12/2015/TT-BTNMT), 2015년 3월 31일 통지 제13호(Circular No. 13/2015/TT-BTNMT) 참고.

39) 2015년 9월 29일 통지 제42호(Circular No. 42/2015/TT -BTNMT).

40) <https://www.env.go.jp/air/tech/ine/asia/vietnam/SeidoVT.html>(검색일, 2018, 1.6)

41) 國際協力銀行, 앞의 책, 94면.

42)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2274>(검색일, 2018. 6.28 ; 김유호, 2015년 베트남 신규 법규

베트남의 환경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들은 다른 부처에서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제를 공포하는 문서의 중복과 법규 내용의 불명확성과 일관성의 부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환경 관리를 위한 조직적인 시스템에서 환경 관리와 보호 활동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도 국제통합 요건(베트남이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WTO 회원국으로서 부담 의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⁴³⁾

또한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사법부의 기능이 약하고, 행정도 기술이나 처리 면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각 국제 원조기관이 제도의 구축과 제도 개혁을 지원하는 과정이 있었다. 참고로 현재 베트남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개발 원조의 일환으로 환경 대책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⁴⁴⁾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베트남 각지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⁴⁵⁾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법에 대한 관례의 결정과 분석이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행정기관과 각 관공서에서 어떤 법을 집행하고 처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특히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환경보호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1. 2014년 환경보호법 개정의 요점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중요한 법령이다. 개

및 개정 동향(3), 라이프 플라자, 2015. 3

⁴³⁾ <https://www.env.go.jp/air/tech/ine/asia/vietnam/OsenVT.html>

⁴⁴⁾ 구체적인 협력 내용으로는 수질 관리와 상수도·배수·오수 처리, 폐기물 관리, 대기 환경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베트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전문가 파견,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대책을 위한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⁴⁵⁾ <https://poste-vn.com/life-tips/vietnam-environment-109>(검색일, 2018.6.2.) ; 베트남과 일본과의 환경프로젝트 소개는 한-베트남 환경산업협력센터, 베트남 환경산업 정보, 2015, 1-3면 참고.

정 환경보호법(No.55/2014/QH13)은 2003년의 1차 개정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의 행정 부처 간의 막연한 권한과 책임의 분담, 실효성 없는 규제 등의 운영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과제와 복잡화·다양화된 환경 정책과 사회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6월에 개정되었다.⁴⁶⁾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환경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후 환경보호법과 관련된 하위 법령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⁴⁷⁾ 요컨대 개정된 내용들은 2013년 베트남 헌법 제43조⁴⁸⁾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⁴⁹⁾

2014년의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구법인 2003년의 환경보호법⁵⁰⁾ 총 15장 136개 조항에서 총 20장 170개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녹색 성장과 녹색 경제의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기후변화의 대응과 환경안전 유지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사업자에 대하여는 규모에 따라 환경보호공약을 사제하고, 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하수오염의 오염대책의 명확화, 자동배수 모니터링장치 설치의무의 추가(공장 및 공단), 인증된 환경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등록 의무화, 배기가스 발생시설의 등록, 모니터링, 기록의 의무화와 자동배기가스 모니터링장치 설치의무가 추가되었다. 정부에 대하여는 국가·지방·도시 수준의 환경보호계획 입안이 추가되었으며, 부처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46) 이재열,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제 개정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5, 29면.

47) ジェトロ・ハノイ事務所, 앞의 글, 2면.

48) 즉 “모든 사람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9) 베트남 헌법 제63조에서 국가는 환경보호정책의 수립과 천연자원의 관리와 사용, 자연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재해 예방과 대책을 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50) 참고로 구법은 제 I 장 일반 규정, 제 II 장 환경기준, 제 III 장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공약, 제 IV 장 자연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 제 V 장 생산·경영·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환경 보호, 제 VI 장 도시 주거지역의 환경보호, 제 VII 장 해양, 하천, 기타 수원 환경보호, 제 VIII 장 폐기물 관리(제 I 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 제 2 절 유해폐기물의 관리, 제 3 절 일반 고형폐기물 관리, 제 4 절 배수관리, 제 5 절 매진, 대기, 소음, 진동, 빛, 방사능 관리 및 제어), 제 IX 장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환경오염의 개선, 환경의 회복, 제 X 장 환경감시 및 정보, 제 XI 장 환경보호를 위한 인력·자금, 제 XII 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협력, 제 XIII 장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 베트남 조국 전선과 그 구성 조직의 책임, 제 XIV 장 환경 관련 위반 행위의 조사·처리, 환경에 대한 이의 제기의 해결 고소와 환경손해배상, 제 XV 장 시행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환경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개정 및 신설이 예정되는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 1)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및 지침에 관한 정령(정령 No.80/2006/ND-CP의 개정), 2) 환경보호계획수립,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계획에 관한 정령(정령 No.29/2011/ND-CP의 개정), 3) 폐기물 및 스크랩관리에 관한 정령(폐수, 배기가스 관리 포함, 신설), 4) 환경보호영역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정령(정령 No. 179/2013/ND-CP의 개정), 5) 환경피해의 특징에 관한 정령(정령 No 113/2010/ND-CP의 개정), 6) 환경모니터링 활동의 실시 조건에 관한 정령(정령 No 27/2013/ND-CP의 개정), 7)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베트남이 참여하는 로드맵 및 방법에 관한 정령(신설) 등이다.⁵¹⁾

2. 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14년의 환경보호법은 총 20장 17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 환경보호기본계획·전략적 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와 환경보호계획, 제3장 자연자원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제4장 기후변화의 대응, 제5장 해양과 섬 등의 환경보호, 제6장 수질, 토양, 대기의 환경보호, 제7장 생산, 경영, 서비스 활동에서의 환경보호, 제8장 도시, 주택지역의 환경보호, 제9장 폐기물관리, 제10장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개선, 제11장 환경에 관한 국가기술기준, 환경규격, 제12장 환경관측, 제13장 환경정보, 환경지표, 환경통계 및 환경보호, 제14장 국가의 환경보호관리기관의 책임, 제15장 베트남의 조국전선, 사회 및 정치조직, 사회 및 직업조직과 주민 사회(공동체)의 환경보호책임, 제16장 환경보호의 재원, 제17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제18장 환경에 관한 위반행위의 감사, 검사, 처분 및 분쟁, 제소 및 고소의 해결, 제19장 환경손해배상, 제20장 시행규칙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환경보호법의 규정들 중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1) ジェトロ・ハノイ事務所, 앞의 글, 2면.

(1) 환경보호와 기본원칙(제1장 제1조-제7조)

제1장 총칙에서는 환경보호의 목표와 기본원칙들을 밝히고 있다. 즉 본 법의 적용범위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활동, 환경보호를 위한 조직, 가정,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보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3조 참조).⁵²⁾ 또한 환경과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환경이란 자연과 인공이 구성된 것으로 인간과 생물의 존재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1호). 환경구성요소로는 토양, 물, 공기, 소리, 빛, 생물 등의 물리적 형태를 포함한 환경을 형성하는 물질적 요소를 의미한다(제3조 제2호). 환경보호활동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 또는 억제하고 환경피해에 대처하고, 환경오염 및 악화를 극복하며, 환경을 회복, 개선하고, 또한 환경을 제대로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제3조 제3호).

환경보호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 확보, 성차별 평등의 추진,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발전, 기후 변화에 대처, 인간이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과 악화를 발생시킨 조직 및 가정과 개인은 환경오염과 악화를 회복하고 손해배상과 범규에 규정된 기타의 책임을 지게 된다(제4조 제2호, 제8호).⁵³⁾

이것은 환경보호를 국가의 기본적 정책으로 선언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원칙을 권리, 책임 및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로서는 a) 산림 및 기타 자연자원의 파괴와 불법

52)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 사회 발전의 확보와 환경 보호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현재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미래 세대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발전을 말한다(제3조 제4호). 이는 환경을 경제와 대립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환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경제를 환경에 맞는 형태로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환경보호법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하에서 미래 세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발전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3) 이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이란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시설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발생케 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침해의 방지·제거 및 손실전보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한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Ketteler, Gerd/Kippels, Kurt, Umweltrecht, 1988, S. 81.

개척 등⁵⁴), b)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 규정에 따르지 않은 독극물, 방사성 물질, 폐기물, 기타 위험물질의 운반 및 매립 등⁵⁵), c) 환경기술기준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 4) 모든 절차에 의한 외국에서의 폐기물의 수입 통관⁵⁶), d) 인간과 동물, 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제품의 생산 및 경영과 기준 허용량을 초과한 독극물을 포함한 원료 또는 건축자재의 생산과 사용, e) 자연유산과 자연보호 구역의 파괴 및 불법행위 등⁵⁷), f) 환경파괴 행위의 은폐, 환경보호 활동의 방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정보의 왜곡, g) 환경관리 규정에 위반한 직위, 권력의 사용, 월권행위, 권한자의 책임 불이행을 금지하고 있다(제7조 제1호-제16호).

주의할 것은 베트남 정부는 특히 환경보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화학물질의 수입금지과 관리에 대처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험실 및 연구시설에서의 화학약품의 관리와 처분, 화학창고의 건설, 바다와 강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관리, 다이옥신, 살충제 및 기타 유해물질로 오염된 토지의 조사 및 처리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환경보호 기본계획,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보호계획 (제2장 제8조-제34조)

(가) 환경보호 기본계획

환경보호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한다. 즉 a) 자연과 사회 경제의 조건, 사회경제, 국방, 치안의 발전종합계획 및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환경보호전략에 적합하여야 한다. b) 토지사용계획과 환경보호계획의 기본 내용과

⁵⁴ 이 외에도 i) 생물자원을 파괴시키는 도구와 방법, 어획기간이나 양에서 불법어획과 포획, ii)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규정한 금지 목록에 기재된 희귀 야생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및 관리, 소비 등이 포함된다.

⁵⁵ 이에는 i) 환경기술표준을 충족하지 않은 미처리 폐기물의 배출, 독극물, 방사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을 토양, 수질, 대기로의 배출, ii) 독성 폐수, 폐기물, 인간과 생물체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미생물과 기타 독성물질들을 수자원으로의 배출, iii) 독성물질이나 냄새를 포함한 연기, 먼지, 가스의 대기로의 방출과 환경기술기준의 허용한도를 초과한 전파, 방사선, 이온화학물의 방출 등이 있다.

⁵⁶ 검역을 통과하지 동식물 허용 목록 이외의 미생물의 수입 통관도 금지된다.

⁵⁷ i)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수단의 침해 ii)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환경면에서 특별한 위험 수준이 있어 금지구역으로 정한 지역에서의 불법 활동과 생활 등을 의미한다.

일치하여야 한다. c) 본 법 제4조에 규정된 환경보호원칙을 준수한다. 또한 환경보호계획은 국가 차원의 환경보호계획과 성급차원의 환경보호계획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성급 차원의 환경보호의 내용은 지방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실시되거나 혹은 경제사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기간은 10년 마다 환경보호기간을 계획하고 20년의 목표를 설정한다(제8조).⁵⁸⁾

그리고 환경부는 국가차원의 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직할의 성과 시 인민위원회는 지역차원의 환경보호 기본계획의 내용을 작성하고 책정하여야 한다(제10조).⁵⁹⁾

(나) 전략 환경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⁶⁰⁾

전략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은 a) 경제사회 구역, 중점적 경제구역, 경제회랑, 경제 벨트의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종합계획 및 구성, b) 중앙 직할의 성과 시, 특별행정 경제사업자의 경제사회 발전종합계획, c) 경제지구, 가공구역, 하이테크 파크, 공업단지의 발전전략과 계획, d) 두 개 이상의 성에 걸친 규모로 자연자원을 채굴, 사용하는 전략·계획, f) 국가, 지역, 지방 수준에서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업종

58) 환경보호기본계획의 기본 내용으로는 a) 환경원상평가, 환경관리, 환경변화와 기후변화의 예측, b) 환경구분, c) 생물의 다양성과 산림환경의 보전, d) 해양, 섬, 하천유역의 환경관리, e) 폐기물관리, e) 환경보호기술 인프라, 환경관측 시스템, f) 본 조항의 b, c, d, e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 하는 계획, h) 계획실시 인제, i) 기획 실시 등이다(제9조).

59) 참고로 환경보호관리에 대한 국가와 행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정부는 전국의 국가 환경보호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며, 환경부장관 및 지방의 성급기관의 장, 국가의 환경보호관리에 관한 각 단계의 인민위원회 등은 환경보호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장 이하 제139조-제143조).

60)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 이 제도는 아직 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으로 개별적 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단계의 정책과 계획수준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정책 및 계획수립 과정과 통합된 평가과정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환경에의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업별 환경평가를 제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효율적인 환경평가제도의 정착에 기여한다. 이수정, 베트남 환경법, 법무법인JP 자료, 2013.11, 9면.

과 분야의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및 구성 등이다.⁶¹⁾

전략 환경평가는 해당 전략 및 기본계획 및 구성의 수립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환경부는 국회, 정부, 총리가 결정한 전략, 기본계획 및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 보고서의 심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성급 차원의 인민위원회는 성과 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권한 내에서의 전략, 기본계획 및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 보고서의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는 보고서를 심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에 의해 설치된 심사 위원회에서 행하며, 심사기관은 보고서의 정보를 감시, 평가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의 반대 의견을 청취한다(제13조-제16조).⁶²⁾

(다) 환경영향평가

베트남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의 사업은 a) 국회, 정부, 총리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 b) 인정된 자연보전 지역, 국립공원, 역사-문화 유적지, 세계유산, 생물권 보호구역, 경승지를 사용하는 사업, c)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이다.⁶³⁾ 이러한 대상의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작성, 심사비용은 사업자의 투자자금에서 책임을 지고 부담하여야 한다(제18조-제19조).⁶⁴⁾

- 61) 우리의 경우 a)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 62)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들 수 있다. 홍성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의 연계방안”, 환경영향평가 제25권 제1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6, 69면.
- 63)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정령 18/2015/ND-CP의 별표 II 참고.
- 64)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 사업의 경위, 사업자, 사업을 승인한 권한기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방법, 2)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시공방법의 선정, 공사와 활동의 평가, 3) 사업실시의 장소 및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 경제사회환경의 현황평가, 사업실시장소의 적합성의 설명, 4)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영향을 예측-평가, 사업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영향의 예측-평가, 5) 사업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 예측-평가 및 그 위해성 관리대책의 방안, 6) 폐기물 처리, 7) 환경과 국민에 대한 영향의 억제 대책, 8) 자문의 결과 9) 환경관리 및 감사 프로그램, 10) 환경보호시설의 건설비용과 환경영향 감소조치의 실시비용의

환경부와 각 성과 성과 동등한 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사하며, 심사 시에 자문을 실시한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기관, 조직은 자신의 견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심사기관은 현장검사를 하고, 분야별 기관, 조직 및 전문가의 반대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제23-제24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 한 후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승인 결정서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승인 결정서에 따라 환경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승인 기관은 심사 결과와 승인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제26조-제28조).⁶⁵⁾

유의할 점은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사후 감사의 실시가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 인증서를 받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라) 환경보호계획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상에 속하는 투자사업과 외국인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 경영, 서비스 사업은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1) 실시 장소, 2) 생산·경영·서비스의 형태, 기술과 규모, 3) 사용하는 원재료, 연료, 4) 발생하는 폐기물, 기타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 5) 폐기물 처리조치 및 환경에 악영향의 제거조치, 6) 환경보호조치의 실시 추진 등이다(제29조-제30조).⁶⁶⁾

적립, 11) 환경보호조치의 실시방법 등이다(제22조).

- 65) 2015년 환경보호법에는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재작성에 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되어, 환경영향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이후 24개월 이내에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 승인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서 계획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규모 및 범위를 확장하거나 기술을 교체함으로써 승인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에서 예상한 것보다 환경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2274>(김유호, 2015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3), 라이프 플라자, 2015. 3)
- 66) 이상의 내용에 있어서 전략적 환경 평가는 전략과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줄이는 것에는 더욱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계획은 구법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호계획은 발전적으로 기존의 베트남 사회 조건에 쉽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새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단 환경보호계획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소규모 프로젝트(즉 200㎡ 미만의 레스토랑, 500㎡ 미만의 사무실 또는 호텔, 50㎡ 미만의 축산 농장의 건설 등) 및 독점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즉 컨설턴트, 마케팅, 가정용품 또는 가정용 조리용품의 판매) 등이다.⁶⁷⁾

(3) 기후변화의 대응(제4장 제39조-제48조)

베트남 정부는 2015년에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베트남이 참여하는 로드맵 및 방법에 관한 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법에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제4장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환경법 수준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환경보호활동은 기후변화의 대응과 조화시켜야 하며, 조직 및 개인은 이 법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생산·경영·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대응 내용은 경제사회 발전전략, 기획, 계획 및 전략 환경평가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로 되어 있는 각 부문과 분야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제39조-제40조).

(가) 온실효과 가스배출의 관리

온실효과 가스배출의 관리를 위하여 온실효과 가스목록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작성하고, 경제, 사회조건에 적합한 온실효과 가스감축 활동을 실시한다. 산림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산림의 탄소축적량의 보존과 증가, 각 생태계의 보전과 발전을 추진하며, 온실효과 가스목록 및 배출량 삭감에 관한 규정의 준수를 검사하고 감사(監査)한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온실효과 가스배출량 삭감에 관한 국제 협력에 기여한다(제41조).

(나) 오존층 파괴 물질의 관리

오존층을 악화시키는 물질의 관리, 감소, 제거의 정책과 계획의 수립을 우선적

⁶⁷⁾ 정령 18/2015/ND-CP의 별표 IV 참고.

으로 실시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오존층을 악화시키는 물질의 생산, 수입, 일시적인 수입과 재수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제42조).

이 외에도 신생 에너지의 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고 노력하며,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민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43조-제47조).⁶⁸⁾

(4) 수질, 토양, 대기의 환경보호(제6장 제52조-제64조)

(가) 하천 및 수자원의 환경보호

생산·경영·서비스업의 소유자, 각 세대와 개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천 유역에 배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감소 및 처리를 하여야할 책임이 있다(제52조 제5호). 그리고 하천의 수질과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며, 폐기물 투기금지 하천과 하천의 부분을 공표하고, 하천에로의 폐수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하천 유역의 수질 환경보호에 대하여 환경부와 각 성급 인민위원회는 하천 유역에 대한 배출원의 정보공개와 오염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고 그 오염을 처리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제54조-제55조).

수원을 조정하기 위해 호수, 연못, 수로, 운하를 조사하고 수원의 저장량 및 수질을 평가하고 보호해야 하며, 수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의 불법 조성과 저수지에 고형폐기물, 토양, 돌, 환경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폐수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지하수 환경보호를 위하여 유해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생산·경영·서비스 사업은 유해 화학물질, 방사성 폐기물의 지하수 유출과 확산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하수를 오염시킨 조직과 개인에게 지하수의 오염을 처리해야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56조-제58조).

⁶⁸⁾ 환경보호법 제4장에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긴 해안선이 있는 베트남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제5장에서는 해양과 섬에 대한 환경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제49조-제51조), 이것은 환경보호법의 단일성을 창출하는 데 있어 주요한 문제를 제시하는 일반적인 장으로 평가된다.

(나) 토양 환경보호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은 조직, 세대, 개인은 토양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토양 오염을 발생시킨 조직, 세대, 개인은 토양 환경을 처리, 개선,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토양 환경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토양 환경의 한계 부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토양 환경의 질이 저하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량, 복구하여야 한다. 특히 생산·경영·서비스 사업은 사업장의 토양 환경오염을 감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진다(제59조-61조).

현행의 환경보호법은 기존의 폐기물, 배수, 대기 관리에 대한 규정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새로이 규정하여 토양의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다) 대기 환경보호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체의 배출을 수반하는 생산·판매·서비스를 실시하는 단체 및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악영향을 저감시키고, 대기 환경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가의 환경기관은 주변의 대기 환경의 질의 측정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산업 가스의 배출량이 큰 생산·경영·서비스 사업장은 오염원의 등록이 필수이고, 배기유량, 성질과 특징의 측정,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산업 가스의 배출량이 큰 생산·경영·서비스 사업장은 자동으로 연속적인 배기관측 시설을 설치하고, 배기배출에 관해서는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62조-제64조).

참고로 대기 환경보호의 조치로 2015년 12월 12일에 온실효과 가스목록에 대한 국가 제도의 승인에 관한 수상 결정 2359호(Decision No 2359/QD-Ttg)가 발행되었다.⁶⁹⁾ 그리고 오염물질이란 허용한도를 초과한 양에 따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 물리, 생물의 요소를 말하며, 수질 및 대기 오염원의 배출기준 등 세부적인 기술적 항목은 정령이나 성령에 맡기고 있다.⁷⁰⁾ 요컨대 베트남의 오염물질의 규제

⁶⁹⁾ 주요 내용은 i) 온실효과 가스목록에 대한 국가 제도의 확립, ii)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온실효과 가스목록의 작성 실시, iii) 분야별 상세한 온실효과 가스목록 지침인 9개의 부속자료 등이다.

⁷⁰⁾ 2015년 7월 24일 교통부 통지 33호(Circular No. 33/2015/TT-BGTVT), 2015년 8월 17일 환경부 통지 40호(Circular No. 40/2015/TT-BTNMT), 2015년 1월 9일 통지 1호(Circular No. 01/2015/TT-BTNMT), 2015년 3월 31일 통지 11호(Circular No. 11/2015/TT-BTNMT) 등 참고

기준치는 서양의 국가처럼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환경법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하다.

(5) 생산, 경영, 서비스 등 경제 활동에서의 환경보호(제7장 제65조-제79조)

(가) 경제 지역의 환경보호

베트남에서 경제 지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인프라 공사를 정비하여야 하며, 경제지역 관리위원회는 환경보호에 관한 전문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지역 관리위원회는 지역 내의 환경보호에 관하여 국가의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환경보호활동을 실시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제 지역의 환경보호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공업단지, 수출가공 지역, 하이테크 파크 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국가의 환경보호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을 검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업단지, 수출가공 지역, 하이테크 파크의 환경보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업단지, 수출가공 지역, 하이테크 파크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투자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첫째, 환경보호에 입각한 경영활동과 사업구분의 실시, 둘째, 환경기술규격을 충족한 폐수의 집중회수 처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자동 연속적으로 폐수를 관측할 수 있는 폐수유량측정 시설 등의 시스템을 설치한다. 셋째, 환경보호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적절한 전문 부서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집중 공업지역과 경영 서비스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투자자는 환경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환경기술규격을 충족한 폐수의 회수 및 처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측을 실시하고,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생산, 경영, 서비스 사업장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은 a) 환경기술규격을 충족한 폐수의 회수 및 처리, b)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형폐기물의 회수, 분류, 보관, 처리, 배출, c)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진과 배기의 감소, 회수, 처리의 실시와 환경에 유해한 독성배기의 누출 및 발산을 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환경과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소음, 진동, 발광 발열의 억제, d) 환경사고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자원과 시설을 확보, e) 환경보호 법안을 책정하고 실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65조-제68조).

한편 직업촌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직업촌의 환경보호 방안을 책정하고, 폐기물의 회수, 분류, 보관, 처리, 배출이 행해진 환경기술규격을 충족한 인프라를 정비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자주관리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개발을 장려하는 직업의 직업촌의 생산 시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a) 환경보호대책의 수립과 실시, b) 소음, 진동, 광선, 분진, 온도, 배기, 폐수의 절감 및 대책을 실시하고, 또 현장에서 서의 오염 처리와 고품폐기물의 집적, 분리, 보관, 처리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70조).

(나) 건설 활동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건설 활동에서의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산·경영·서비스 사업장 건설의 설계 및 건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공사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a) 거주 구역에서의 건설 공사는 환경기술규격을 초과하는 분진, 온도, 소음, 진동, 광선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건축 자재의 운반은 누설이나 낙하,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없는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c) 폐수, 고품폐기물, 기타 각종 폐기물은 환경기술표준에 부합하는 회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제73조).

(다) 상품의 수입과 통관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상품의 수입과 통관하는 기계, 설비, 수단, 원료, 연료, 화학물질, 상품 등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기계, 설비, 수단, 원료, 연료, 화학물질, 상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a) 환경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계, 설비, 수단, b) 분해된 중고 기계설비, 교통운송 수단, c) 수입금지 목록에 속하는 원료, 연료, 물자, 화학물질, 상품, d) 질병을 유발하는 방사선, 미생물 및 기타 독성 물질에 오염된 기계, 설비, 수단으로 세척되지 않거나 정화할 수 없는 것, e) 사용이 만료된 또는 식품안전위생 규정을 보장 할 수 없는 음식, 식품원재료, 식품첨가제, 가공보조제, 용구, 포장재료, f) 사용이 만료된 혹은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약과 약의 원재

료,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이다.

특히 외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사업주(조직과 개인)는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한 창고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환경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재생, 재사용과 폐기물에 부수된 부산물의 처리기술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기물을 수입하여야 하며, 폐기물에 포함된 부산물의 양도나 판매는 금지된다. 그리고 환경기술 규격에 충족하지 못한 폐기물은 재수출하여야 하며, 재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 폐기물의 담보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제75조-제76조).

이 외에도 유적지, 사적, 관광지, 숙박 시설의 관리 및 개발하는 조직과 개인은 일련의 환경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화학물질, 농약,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환경보호 조치와 연구소 및 실험실의 환경보호 조치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제77조-제79조). 또한 도시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조치들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80조-제84조).

(6) 폐기물의 관리(제9장 제85조-제103조)

(가) 폐기물의 관리 규칙

폐기물이란 생산, 경영, 서비스, 생활, 기타 활동에서 배출된 물질을 말한다(제3조 제12호). 폐기물은 발생, 감소, 분류, 수집, 재사용, 재생이용 및 처분의 모든 공정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정부는 폐기물 관리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생산·경영·서비스 사업자는 폐기물의 삭감에 노력하고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또는 재생이용,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이양할 책임이 있다. 또한 생산·경영·서비스 책임자는 폐기된 제품의 회수와 처리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각급의 인민관리위원회에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⁷¹⁾을 지우고 있다(제85조-제88조).

71) 즉 1) 관할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 인프라 계획을 작성하고, 승인, 실시한다. 2) 관할 지역에서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에 투자, 건설, 운영. 3) 법규에 따라 폐기물 관리활동에 대한 우대정책과 지원정책의 책정과 실시 등이다.

(나) 유해 폐기물의 관리

유해 폐기물이란 독성, 방사성, 감염성, 가연성, 폭발성, 부식성, 중독성 등의 위험성을 포함하는 물질을 말한다(제3조 제12호). 유해 폐기물의 배출자는 성급 환경보호 관리기관에 신청서류를 작성하고登記하여야한다. 유해 폐기물의 처리는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조직과 개인만이 할 수 있다. 유해 폐기물의 배출자는 환경기술 규격을 충족한 분류분별, 수집, 임시 저장 및 처리를 하여야하지만,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 처리업무의 인가증을 가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 폐기물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용 시설에 임시 저장하여야 한다.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처리 자격에 기재되어 있는 적절한 전용설비 및 방법에 따라 운반해야하며, 외국에 유해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야 한다(제90조-제92조).

(다) 폐수의 관리

폐수는 환경기술 규격에 적합한 수집과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규정한도를 초과한 유해 물질을 포함한 폐수는 유해 폐기물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생산·경영·서비스 사업의 폐수는 환경기술 규격에 적합한 수집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제99조-제100조).

(라) 분진, 배기가스, 소음, 진동, 광선, 방사능의 관리 및 검사

먼지와 배기가스를 배출시키는 생산·경영·서비스 사업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먼지와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검사와 처리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 먼지와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교통수단, 기계, 설비, 건설 공사는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과장치, 보호설비, 환경기술 규격을 충족한 먼지감소 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소음, 진동, 광선, 방사능을 초래하는 조직과 개인은 환경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검사와 처리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주택 지역에서 소음, 진동, 광선, 방사능을 초래하는 생산, 경영, 서비스 사업자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 및 식감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죽의 생산, 수입, 운송, 경영, 사용을

금지하며, 화약의 생산, 수입, 운송, 경영, 사용은 정부의 총리 규정에 따른다(제102조-제103조).

폐기물의 정의에서 폐수와 가스 등을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포함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폐수의 관리와 배기가스, 소음, 진동 및 방사능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환경보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는 2010년 이전까지는 폐기물의 처리비율은 50% 이하였으며, 처리시설을 가진 기업은 20% 이하이었다. 2010년 이후부터 유해폐기물의 처리율이 60% 정도였으며, 처리시설의 정비는 공업단지는 70%(도시부는 40%) 정도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폐기물의 재사용 비율을 30%,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⁷²⁾

(7)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제10장 제104조-제112조)

(가)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의 처분과 오염지역에 대한 처리 등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은 폐수, 배기, 분진, 고형 폐기물, 소음, 진동 및 기타 오염물질을 환경기술 기준을 초과하여 심각한 오염도에서 배출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중대한 환경오염 가해사업장 겸 환경오염대책 목록에 기재된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및 환경복구는 a) 오염 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특정하고, b) 오염 수준의 특정 및 위험을 평가하고, c) 오염의 원인 및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d) 오염에 대한 대처와 환경의 질 회복과 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하며, e) 환경의 영향평가를 오염원인자에게 배상청구의 근거로 한다. 또한 조직 및 개인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환경 개선과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오염에 대한 대처 및 환경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수의 조직 및 개인이 동시에 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책임분담으로 상호 합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관리기관이 관계자와 협의하여 오염의 처리 및 환경 개선에 있어서 각 조직과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제104조,

⁷²⁾ https://www.env.go.jp/earth/coop/oemjc/H18_csr_asia/H18_all.pdf, 14면.

제106조-제107조).⁷³⁾

주목할 점은 베트남에서 이전에는 환경오염의 처리 및 개선 등에 대한 환경문제를 대책하는 담당부서가 없었으나, 환경부가 환경 관련 정책의 입안 및 환경 관리 등의 역할을 시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담당함으로써, 보다 더 계획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특히 현행의 환경보호법의 적용으로 향후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처리와 개선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국내의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의 복구와 개선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환경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⁷⁴⁾

(나) 환경사고의 방지와 처리

환경사고란 인간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자연의 이상변화로 중대한 환경의 오염, 악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환경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생산, 경영, 서비스, 운송 수단의 경영자 및 소유자는 a) 환경사고의 예방과 대응계획의 작성, b) 환경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 공구, 도구의 설치 및 준비, c) 환경사고에 대한 현장대응의 인력의 육성, 훈련 및 조직화, d) 노동 안전에 관한 법률준수 및 정기검사 제도의 확립, e) 환경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문제 원인의 제거 조치 등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또한 환경사고에 대한 대응의 책임으로 환경사고를 발생시킨 단체 및 개인은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사람과 재산을 구하고, 환경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할 성, 기관 또는 환경보호 전문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사고에 의한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동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108조-제109조).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환경사고로 오염된 지역

⁷³⁾ 이는 복수의 오염원인자의 행정상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환경오염정화비용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베트남 민법 제587조(복수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복수의 가해자가 함께 손해를 가한 경우에 복수의 가해자는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한다. 복수의 가해자 등의 배상책임은 각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확정된다. 고의, 과실의 정도를 확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서로 동일한 비율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⁷⁴⁾ <https://poste-vn.com/life-tips/vietnam-environment-109>(검색일, 2018.6.2.) 참고.

의 범위, 경계, b) 오염도, c) 오염원인자 및 관계자의 책임, d) 환경오염 처리와 환경 회복의 대책, e) 환경피해를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배상청구의 근거로 하는 등이다. 그리고 환경사고를 발생시킨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오염의 범위, 경계, 수준, 원인의 조사·특정, 오염제거 및 환경회복의 방법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정부의 환경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b) 환경오염원의 억제, 오염의 확대방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저감하는 대책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c) 국가의 환경 관리기관의 요청에 따라 오염제거 및 환경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d)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환경 관리기관에 대하여 환경사고의 대응과 억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천재지변에 의한 오염이나 원인불명의 오염의 경우에는 각급의 성과 청, 기관, 각급의 인민위원회는 책임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 동원하여 오염에 대처하고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제111조-제112조).⁷⁵⁾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처리 및 피해에 있어서 환경사고의 원인과 피해자 그리고 국가라는 3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사고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 할 수 없는 넓은 의미의 피해인 경우도 있다. 환경사고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도 실무상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해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⁷⁶⁾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장이나 사업 주체가 수익성의 관점에서 환경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도입하고 있는 공장에서도 설비의 가동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출입 검사가 있을 경우에만 가동시키는 경우도 있다.⁷⁷⁾

75) 이 외에도 환경기준(환경에 관한 국가기술기준)과 환경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13조-제120조), 환경관측의 실시(제121조-제12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76) 우리의 경우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고 정의하고 있다.

77) 요컨대 환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기업도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형편이다.

(8) 환경보호의 재원(제16장 제147조-제155조)

환경보호비용에 대하여 환경에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환경세를 납부하여야한다. 그리고 환경보호비용의 징수 금액은 첫째 환경에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 둘째 폐기물의 유해도 및 환경에의 가해도, 셋째 폐기물을 수용하는 환경의 수용능력 등의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환경보호비용의 징수 금액은 각 단계에 있어서 경제·사회 조건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며, 환경보호비용의 수입은 모두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되어 진다.

한편 환경보호기금은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산업, 분야, 중앙 직할시에서 설립하는 재정 조직이다. 또 국가는 기업과 조직 및 개인의 환경보호기금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의 환경보호기금의 활동 자금은 국가 예산, 환경보호비용, 국가에 대한 환경손해배상금,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지원금, 분담금 및 투자위탁금 등으로 구성된다(제148조-제149조).

이 외에도 국가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의 기술 인프라의 향상을 위하고, 조직 또는 개인의 환경 산업의 개발에 투자하고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제153조), 특히 학교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의 항목을 도입하는 등 환경보호의 인재육성(제155조)을 장려하고 있음이 특징이다.⁷⁸⁾

현실적으로 환경보호의 재원에 대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예산의 배분이 낮고,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이 많으며, 지방에 대한 외자에 의한 지원 프로젝트가 적다. 또한 배수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배출량의 실측기술 및 기자재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과징금을 재원으로 상정하고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등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⁷⁸⁾ 또한 국가는 개별적 환경 분야에 대한 서비스 회사의 설립을 장려하며, 환경보호 활동에 대하여 우대지원 정책과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개발투자·기술이전·과학기술의 응용을 행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우대지원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제151조-제152조 참고).

(9) 환경에 관한 위반행위와 환경 분쟁의 해결 등(제18장 제159조-제162조)

(가) 환경보호의 검사 및 감사의 실시와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환경보호의 검사 및 감사실시의 책임으로 환경부장관, 국방부장관, 공안부장관 등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국 또는 국방 및 안전에 대한 환경보호의 검사 및 감사의 실시를 지도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환경보호의 검사 및 감사의 실시를 지도한다.

그리고 위반의 처리로서 조직과 개인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환경을 오염, 악화 또는 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의 회복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기관 또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 간부 및 공무원은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조직 및 국민에게 문제 또는 피해를 끼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를 옹호하고, 무책임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환경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위반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 처리되며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제159조-제160조).

(나) 환경에 관한 분쟁

환경 분쟁의 내용은 첫째 환경구성 요소의 개발 및 사용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분쟁, 둘째 환경오염, 악화 및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의 확정에 관한 분쟁, 셋째 환경오염, 악화 및 사고의 처리책임과 결과의 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환경 분쟁의 당사자로는 a) 환경구성 요소를 이용한 조직과 개인 사이의 분쟁, b) 환경구성 요소를 개발 또는 이용한 조직·개인과 환경오염, 악화, 손해를 입은 환경의 개조 또는 회복의 책임을 지는 조직·개인 사이의 분쟁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환경 분쟁의 해결은 계약 및 관련법의 규정, 민사 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환경 분쟁에서 분쟁의 일방 또는 복수의 당사자가 외국의 조직·개인인 경우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법률에 따라 해결되고, 다만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조직과 개인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제소, 또는 법원에 기소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에 대한 기소의 발효 시점은 조직 또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위반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조직과 개인이 그 손해를 발견한 시점으로 한다(제161조-제162조).

현실적으로 베트남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엄격한 제재 조치가 실시되지 않아,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견되더라도 기업의 조업정지는 경제적인 타격 및 실업자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조업정지 및 직장의 폐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다.

(10) 환경손해배상(제19장 제163조-제167조)

(가) 환경손해와 책임의 원칙

환경손해란 환경오염과 환경악화에 의한 손해로써 환경의 기능과 유효성의 악화⁷⁹⁾, 또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악화에 의해 초래된 건강, 생명, 조직 및 개인의 재산 및 이익에 대한 손해를 의미한다. 국가의 관할기관은 환경오염과 그 영향을 수시로 연구, 조사, 판단을 하여야 하며, 조직 및 개인이 일으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견·처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 및 환경악화에 대한 개인의 책임확정 원칙으로 첫째,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보호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둘째, 환경오염 및 환경악화를 일으킨 조직·개인은 행위로 인한 영향의 회복(정화 등)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셋째, 개인이 조직에서 지시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환경악화를 일으킨 경우 그 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163조-제164조).⁸⁰⁾

79) 악화는 보통의 악화, 심각한 악화, 특별히 심각한 악화의 기준에 따른다. 또 환경의 기능과 유효성이 악화된 환경의 범위와 경계의 확정은 다음과 같다. a) 심각한 악화 또는 특별히 심각히 악화된 지역 또는 면적의 확정, b) 악화 중심지 주변의 면적, 경계의 확정, 중심부 및 중심부 주변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의 면적, 경계의 확정 등이다. 그리고 환경과피해의 내용은 악화된 환경구성 요소의 수량, 생태계의 상태, 손해를 입은 종의 확정과 환경구성요소별, 생태계별, 종별의 손해 정도 등으로 확정된다(제165조 제1호-제3호).

80) 환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제160조 제2호 참고).

환경손해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하고 있다. 즉 a) 환경구성 요소의 기능과 유효성의 악화에 의한 현재 및 장기적 손해액의 계산, b) 환경처리, 개선, 복구비용의 산출, c) 손해발생 원인의 삭감 또는 철거비용의 산출, d) 이해 관계자의 의견청취, e) 구체적인 요인에 의해 환경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배상 및 그 해결의 근거로서 위의 a), b), c), d)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의 기능과 유효성의 악화로 인한 손해의 확정은 독립적으로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여 확정되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요구하는 경우 환경보호 전문기관은 손해의 산출 및 확정을 지도하거나 손해의 확정을 증명하는 책임을 진다. 그리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악화로 인해 발생한 건강, 생명, 조직 및 개인의 재산 및 이익에 대한 손해의 확정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제165조 제4호-제6호).⁸¹⁾

(나) 환경손해의 심판과 환경손해의 책임보험

환경의 기능과 유효성의 악화로 인한 손해의 심판은 손해를 입은 조직 및 개인 또는 환경 손해배상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손해 심판의 근거는 손해배상청구 신청서, 정보, 자료, 증거 및 손해배상과 손해발생 대상에 관련한 것 등이다. 그리고 손해심판기관의 선정은 손해청구자와 손해배상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해결의 책임이 이양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는 각 기업과 생산, 경영,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조직 및 개인의 환경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을 권장하며, 또 환경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활동을 하는 조직과 개인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제166조-제167조).

요컨대 베트남 민법(91/2015/QH13) 제602조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환경을 오염시키고 손해를 발생시킨 주체는 해당 주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⁸¹⁾ 베트남 헌법 제63조 제3항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자연자원을 고갈시키며,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킨 조직과 개인은 엄격하게 처리되고, 손해를 회복하고,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환경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이 명시되었다.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피해 등의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요건에서 무과실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손해배상에 있어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검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현행의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자연환경(수질, 토양, 대기), 경제활동에서의 환경보호, 폐기물의 관리,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 환경보호 비용과 기금, 환경분쟁의 해결 및 환경손해배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적용범위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활동, 환경보호를 위한 조직, 가정,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총칙에서는 환경보호의 목표와 환경의 개념, 환경보호,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개념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원인자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환경정보공개 원칙 등 환경법의 기본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베트남 정부는 특히 환경보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화학물질의 수입금지과 관리에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 인증서를 받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긴 해안선이 있는 베트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의 대응문제는 세계 각국의 문제이기도 하여 이를 규정한 것은 우수한 면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오염물질의 규제 기준치는 서양의 국가처럼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정의에서 폐수와 가스 등을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환경오염에 대한 조치를 각 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경제 지역과 생산, 경영, 서비스 사업장, 건설 활동, 상품의 수입과 통관 등에 있어서 환

경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에 있어서 복수의 조직 및 개인이 동시에 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책임분담으로 상호 합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의 관리기관이 관계자와 협의하여 오염의 처리 및 환경 개선에 있어서 각 조직과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복수의 오염원인자에게 환경오염의 처리 및 복구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처리 및 피해에 있어서 환경사고의 원인과 피해자 그리고 국가라는 3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환경보호기금은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산업, 분야, 중앙 직할시에서 설립하는 재정 조직으로서, 국가는 기업과 조직 및 개인의 환경보호기금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의 환경보호기금의 활동 자금은 국가 예산, 환경보호 비용, 국가에 대한 환경손해배상금, 국내의 조직 및 개인의 지원금, 분담금 및 투자위탁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보호의 재원에 대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예산의 배분이 낮고,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이 많으며, 지방에 대한 외자에 의한 지원 프로젝트가 적다는 점들을 등 수 있다.

또한 환경손해와 책임에 있어서 환경손해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상의 분쟁은 계약 및 관련법의 규정과 민사 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환경오염 및 환경악화(환경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확정하고 있다. 즉 환경손해의 개인책임의 원칙으로 조직의 최고 책임자, 조직 및 개인, 직무수행을 지시한 조직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오염원인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개인인 경우, 즉 환경손해를 발생시킨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오염시설의 소유자나 설치자 또는 운영자, 운송인 등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⁸²⁾ 한편 국가가 각 기업에 대하여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 권장과 특정의 조직과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규정한 것은 매우 선진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 외에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즉 지구 환경, 지역 환경, 국내 환경의 보호에 유익하고, 또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⁸²⁾ 우리의 경우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국익과 능력에 따른 국제 협약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서명 또는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6조). 이는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과 온난화 등 지구 규모에서의 대처가 필요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제 협력이 요구된다. 유의할 것은 환경보호법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 충돌할 때에는 국제 협약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결어

현행의 환경보호법의 개정된 내용들은 2013년에 개정된 베트남 헌법 제43조의 환경권과 제63조의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수립, 환경보호활동의 장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은 거의 우리나라의 환경법과 같이 선진적인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법의 실효성과 판례의 부족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와 규제적 조치, 그리고 사후적 구제 조치 등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들이 적지 않다.

이전의 2005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적 불비, 유독성 화학물질의 방출 및 처분, 환경사고 및 기타 여러 가지 문제의 대처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행의 환경보호법이 선진적으로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의 환경문제를 규제하고 환경보호의 목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하위 규정들과 지침들이 형성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도시에 집중된 대기오염은 많은 사상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2016년 대만의 기업 Formosa가 산업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배출한 사건 이후, 수질오염 문제에도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규제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환경보호법과 관련 법령들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환경전반에 걸쳐 단속과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⁸³⁾

베트남에서 이전에는 환경오염의 처리 및 개선 등에 대한 환경문제를 대책하는 담당부서가 없었으나, 현행의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가와 행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환경부가 환경관련 정책의 입안 및 환경 관리 등의 역할을 시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담당함으로써, 보다 더 계획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특히 향후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처리와 개선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국내의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의 복구와 개선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환경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베트남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오염 대책에 관한 규제와 기준은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폐수의 관리와 배기가스, 소음, 진동 및 방사능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환경보호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손해와 책임에 있어서도 환경손해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상의 분쟁은 계약 및 관련법의 규정과 민사 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환경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도의 집행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 성장과 경제 개발이 우선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 간의 권한의 중복과 책임의 불이행도 적지 않다.⁸⁴⁾ 또한 하천 유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부처 및 지역의 경계를 넘어 효과적인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법적 문서가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령간의 중복과 누락 또는 실현성이 부족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것도 많다. 그 외에 사업 주체가 수익성을 위해 환경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인재의 육성, 환경보호 재원의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83) 베트남에서는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의 투자 프로젝트는 불허하고 있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해외 기업들이 많은 투자활동을 하면서 투자에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련된 규정 또한 준수해야하며, 환경보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사업의 경우에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베트남 픽토리얼, 2016년 8월 12일자 기사참고(<https://vietnam.vnnet.vn/korean/환경보호...-/257766.html>)

84) 예를 들어,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방안의 검토는 베트남 환경총국(VEA)의 국제협력·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과학기술부가 기본적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승인을 주관하는 것이 국가의 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판례 내용과 결정이 중요한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환경담당 부서인 관공서 등에서 어떤 법을 집행하고 처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정책의 변화와 환경 법규의 빈번한 개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외국의 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 2018. 7. 28. 심사일 : 2018. 8. 28. 게재확정일 : 2018. 8. 29.

참고문헌

- 김유호, 2015년 베트남 신규 법규 및 개정 동향(3), 라이프 플라자, 2015.03
- 노구해, 베트남 환경산업 시장 현황조사 및 성공적 진출전략 수립, 「(사)한국환경산업 협회 보고서」, 환경부, 2006.10
- 이수정, 베트남 환경법, 법무법인JP 자료, 2013.11
- 이재열,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제 개정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5
- 정건영, “베트남 환경관리 체계와 환경산업 투자전망”, 「GGGP(special issues)」 제87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01
- 홍성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의 연계방안”, 「환경영향평가」 제25권 제1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6
- 한-베트남 환경산업협력센터, 「베트남 환경시장 2013(폐기물, 수처리 분야 중심)」, 2013
- 한-베트남 환경산업협력센터, 「베트남 환경산업 정보」, 2015
- ジェトロ・ハノイ事務所, 改訂環境保護法(2015/01/01施行)等の環境法規の動向について, 2015.03
- 國際協力銀行, ベトナムの投資環境, 株式会社國際協力銀行, 2017.08
- Asian Development Bank, Viet Nam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ssessment, 2013
- Tuan AnhHoang, Nam Xuan Chu, Trung Van Tra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 Vietnam: Source, Impact And Reme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Y RESEARCH, VOLUME 6, ISSUE 02, 2017.02
- GREEN GROWTH & ENVIRONMENT SECTOR COOPERATION BETWEEN VIETNAM & DENMARK, Annual report for 2017(Vietnam miljoe.pdf)
- Ketteler, Gerd/Kippels, Kurt, Umweltrecht, 1988

Vietnam Investment Review, Air pollution is Vietnam's silent killer, 2018.02.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Law(No. 55/2014/QH13)
Vietnam Civil Law(91/2015/QH13)
Vietnam Decree No. 43/2015/ND-CP, Decree No. 54/2015/ND-CP
Decree No. 18/2015/ND-CP
Vietnam Circular No. 33/2015/TT-BGTVT, Circular No. 199/2015/TT-BTC
Circular No. 40/2015/TT-BTNMT, Circular No. 42/2015/TT -BTNMT
Circular No. 01/2015/TT-BTNMT, Circular No. 11/2015/TT-BTNMT
Circular No. 12/2015/TT-BTNMT, Circular No. 13/2015/TT-BTNMT
Vietnam Decision No. 264/2015/QD-TTg
Vietnam News Liner, 2017. 10. 26
<https://www.env.go.jp/air/tech/ine/asia/vietnam/files/law/QD1216-English.pdf>
http://www.jetro.go.jp/world/asia/vn/business/pdf/VN_20140623.pdf
<http://www.rotary-aomori.org/2007/2007-data/speech1.pdf>(, 베트남의 환경문제)
<https://www.oecc.or.jp/wp-content/uploads/2017/05/41p8.pdf>
<http://library.fes.de/pdf-files/bueros/vietnam/13367.pdf>
https://www.env.go.jp/earth/coop/oemjc/H18_csr_asia/H18_all.pdf
<https://poste-vn.com/life-tips/베트남의 환경문제-109>
<https://poste-vn.com/life-tips/vietnam-environment-109>
<https://www.export.gov/article?id=Vietnam-Environmental-and-Pollution-Control-Equipment-and-Services>(Vietnam Country Commercial Guide, Vietnam-Environmental and Pollution Control Equipment and Services, 2017. 7)
<http://www.n-liner.jp/society/4241-베트남인의死의10%가大氣汚染に起因-深刻な社会問題化.html>
<https://www.env.go.jp/air/tech/ine/asia/vietnam/OsenVT.html>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2274>
<https://syracusecoe.org/water-pollution-in-vietnam/>
<https://thewaterproject.org/water-crisis/water-in-crisis-vietnam>
<https://www.shimz.co.jp/company/about/news-release/2016/2016023.html>

<https://www.env.go.jp/air/tech/ine/asia/vietnam/SeidoVT.html>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2274>

<https://poste-vn.com/life-tips/vietnam-environment-109>

<https://vietnam.vnnet.vn/korean/환경보호...-/257766.html>

[Abstract]**A Study on the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Cho, Eun-Rae

(Associate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urrent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is one of the urgent problems in Vietnam. The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 usually occurs especially in large urban areas. Transport activities are a major source of air pollution in big cities in Vietnam, From this situation,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ave issued and amended many laws, regulations, and specific decrees to limit the release of pollutant to the environment.

Vietnam has amend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EPL) in 2014 and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since January 1, 2015. The revised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pecify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and Article 63 of the Vietnam Constitution. This Law provides statutory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measures and resources used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ights, powers, duties and obligations of regulatory bodies, agencies, organizations, households and individuals who are tasked with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ask.

And this law generally provides the Plann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te management, costs and fund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All activiti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ust be harmoniously connected with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is regulation shows the advanced level of environmental laws.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should apply for an investment permit and submi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obtain an environmental certificate. The regulatory standards for pollutants in Vietnam are adopting the most stringent standards, just like the European Un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definition of waste includes wastewater and gas as hazard substances.

Regulations and standards regarding measur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well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term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liabilit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is clear and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is clarified. In addition, it is very progressive that the state encourages each company to join liability insurance for environmental damages.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Sinc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re priorities in Vietnam,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fully considered. Also, there is redundancy of authority between departments and failure of accountability as well. Businesses operators are carrying business activities without implementing sufficient environmental measures for their profitability.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securing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s remain as challenges for Vietnam's environmental management.

Since the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 and frequent revi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a great impact on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ir trends and understand their structure.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hen it comes to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Vietnam.

주 제 어 베트남 환경보호법, 베트남 환경오염, 환경보호계획,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폐기물 관리, 환경사고, 환경손해

Key Words 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Vietnam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Plan,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the report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te Management, Environmental Emergencies, Environmental Damages